

의안번호	제 257 호
의결 연월일	2019. . . (제 회)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심기보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8월 16일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심기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8월 16일
발 의 자 : 심기보, 박상돈, 최경천,
박형용, 육미선, 이상욱,
박문희

1. 제안이유

- 강원도 산불피해 등 타 시·도의 재해 발생 시,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(재해구호기금)에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금의 용도에 타 시·도 재해 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3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 - 65호
- 다. 협의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
- 라.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재해구호사업

가. 「재해구호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

나. 타 시·도 재해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기금운용관은 복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복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재해구호사업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</p> <p>1. <u>재해구호사업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「재해구호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나. 타 시·도 재해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u></p>	<p>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기금운용관은 복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복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재해구호법

제4조(구호의 종류 등)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임시주거시설의 제공
2. 급식이나 식품·의류·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
3. 의료서비스의 제공
4.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
5. 위생지도
6. 장사(葬事)의 지원
7. 심리회복의 지원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·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. 7. >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14조(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)

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□ 재해구호법 시행령

제8조(재해구호기금의 용도)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4조제1항제1호·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
2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·운영
3.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
4.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
5.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
6.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
7. 재해구호물자의 조달·운송
8.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·훈련 및 급식
9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

② 시·도지사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(補填)한다. <신설 2013. 6. 17., 2016. 11. 1., 2018. 12. 18.>

③ 삭제 <2018. 12. 18.>

제9조(재해구호기금의 운영·관리) ① 시·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재해구호기금의 운영·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“라 한다)의 [조례](#)로 정한다.